국민수퍼정기예금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국민수퍼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에는 **제한이 없습니다.**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계약기간

① **고정금리형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월 또는 일단위**로 합니다.

② **단위기간금리연동형은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월단위로 하고, 이때 연동(회전)단위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월단위 또는 30일 이상 181일 이내 일단위**로 합니다.

③ **CD금리연동형은 6개월, 1년, 2년, 3년**으로 합니다.

제 5 조 저축방법

① 이 예금의 거래처는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**신규시에는 최저 1백만원 이상 입금하고 10만원 이상 총 30회(신규 포함) 범위내에서 수시로 추가 입금**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 이율의 적용

① **고정금리형은 계좌별로 신규 및 추가입금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이율이 계약기간까지 적용**됩니다.

② **단위기간금리연동형은 각 단위기간별로 단위기간 시작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이율이 적용**됩니다.

③ **CD금리연동형은 3개월 단위로 신규일 및 추가입금일 또는 신규일 및 추가입금일로부터 매 3개월 경과일이 속한 주의 전주 최종 영업일의 직전 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출하는 CD수익률에 연동한 이율이 계약기간까지 적용**됩니다.

※ CD수익률 :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(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봄)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

다만, **금융투자협회가 CD수익률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CD수익률을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(AAA등급)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(민간평가사 CD수익률)로 변경하고,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, 기간 등을 공시하며 개별 가입자에게 안내하기로 합니다.**

④ 거래처는 **신규 및 추가 입금시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이율적용방법을 선택**하여야 합니다.

⑤ **이 예금의 신규 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 우대금리를 기본이율에 가산합니다.**

※ **금리우대쿠폰 우대금리는 신규 당시 적용한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, 세부 사항은 금리우대쿠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**

※ **금리우대쿠폰은 신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**

제 7 조 이자지급방법 등

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법 중 고정금리형은 월이자지급식, 만기이자지급식, 월이자복리식, 단위기간금리연동형은 단위기간이자지급식, 단위기간이자복리식이 있고, CD금리연동형은 만기이자지급식, 3개월이자지급식, 월이자지급식이 있으며, **거래처는 이자지급방법을 가입시 및 추가 입금시 선택하여야 하고, 이자지급방법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.**

② **고정금리형의 이자는 신규일 및 추가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해당이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**합니다.

③ **단위기간금리연동형의 이자는 단위기간별로 영업점에 게시된 해당이율로 셈하여 단위기간 마다 지급하거나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**합니다.

④ **CD금리연동형의 이자는 신규 및 추가입금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은 신규 및 추가입금일 현재 제6조 제1항에 의한 해당 이율로 셈하고, 신규 및 추가입금일로부터 매 3개월 경과 시점으로부터 이후 3개월간은 신규 및 추가입금일로부터 매 3개월 경과시점 현재 제6조 제3항에 의한 해당 이율로 셈하여 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거나,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**합니다.

제 8 조 중도해지

거래처가 **만기일 이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** 신규일 및 추가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**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**합니다. 다만, **단위기간금리연동형의 경우 단위기간 경과후 해지할 때에는 경과된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**합니다.

제 9 조 만기후이율

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 및 추가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10 조 분할인출

이 예금은 **1개월이상 경과된 고정금리형에 한하여 신규 및 추가입금 계좌별로 3회(해지 포함)까지 총 15회 범위내에서 분할인출**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관련대출

이 예금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및 구 주택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2002.9.23 부터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5.6.19 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2.12.15 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3.10.4 부터 시행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